

EU PPWR 개요 및 기업 대응 전략

2026.09.11.(금),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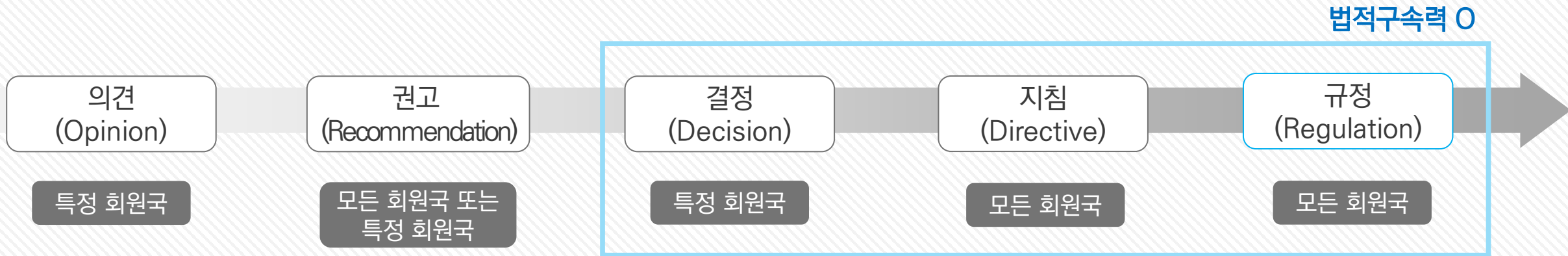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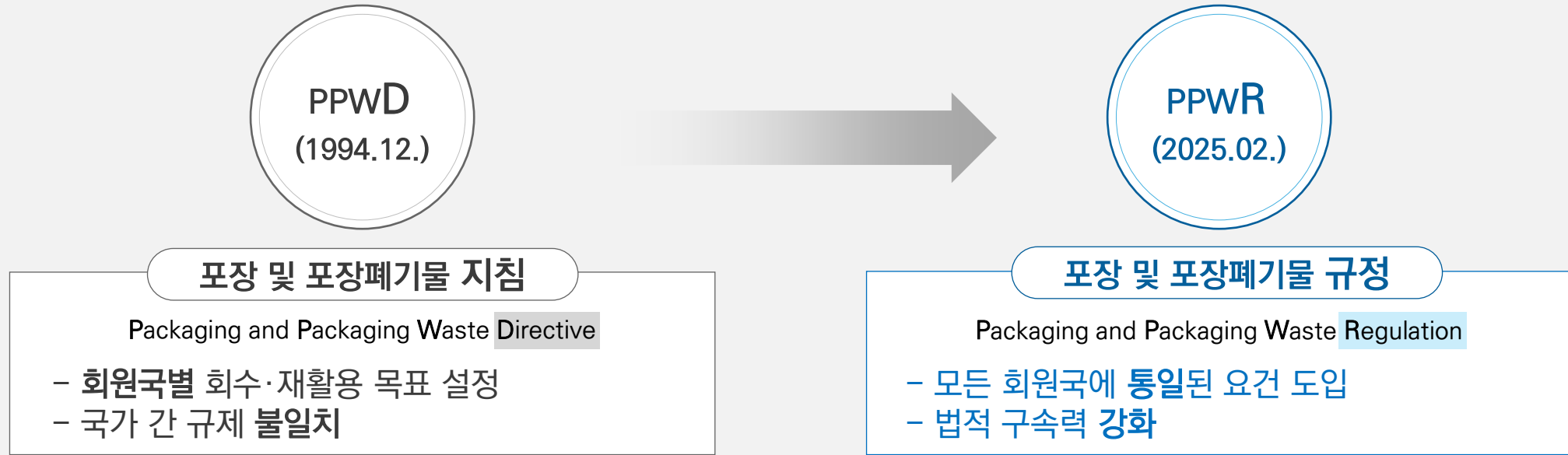
I. EU PPWR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 적용 범위
- 경제주체별 역할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III. EU PPWR 대응 방안

I. EU PPWR 개요 | 도입배경및목적



I. EU PPWR 개요 | 도입배경및목적

PPWR

'25.02 발효

'26.08 시행

- ✓ 포장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 상의 영향 감축
- ✓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 보장
- ✓ 기존 지침(PPWD)를 대체하여 모든 경제주체와 회원국에 더 명확하고 엄격하며, 통일된 요건 도입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I. EU PPWR 개요 | 적용 범위

PPWR 제3조제1항제1호

“ 포장재 ”

경제 주체가 제품을 다른 경제 주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진열하기 위하여 의도된 물품
제작 재질과 무관하며, 기능 · 재질 · 설계를 기준으로 형식별로 구분되는 것

판매(Sales) 포장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과 포장으로
구성된 판매 단위를
형성하도록 고안된 포장

묶음(Grouped) 포장



판매처에서 여러 개의
판매 단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하도록 고안된 포장

운송(Transport) 포장



판매 단위나 판매 단위 묶음의
취급 및 운송 시
제품의 손상 방지를 위해
고안된 포장

→ EU 시장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

I. EU PPWR 개요 | 경제주체별 역할

제3조제1항제13호

제조사(Manufacturer)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
※ 자기 이름·상표로 설계·제조하게 한 자 포함

제5조~제12조에 대한 적합성 확보
TD 작성 및 적합성 평가
DoC 작성

제3조제1항제15호

생산자(Producer)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회원국에 최초로 제공하는 자

경우에 따라, 제3조제1항제13호 중 하나

EPR 의무 이행

제3조제1항제17호

수입자(Importer)

: 제3국의 포장을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EU 내 설립된 자

제조자의 TD, DoC, 라벨링 등 확인
→ 부적합 시 시장 출시 제한

제3조제1항제16호

공급자(Supplier)

: 제조자에게 포장 또는 포장 재료를
공급하는 자

포장(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I. EU PPWR 개요 | 경제주체별 역할

국내 페트병 제조사로부터 병을 납품받아,
음료를 충전하여 상표를 부착한 후,
EU 회원국 소재 회사에 수출하는 경우

공급자(Supplier)

국내 포장재 제조사



제조자(Manufacturer)

국내 브랜드사



생산자(Producer)

수입자(Importer)

EU 내 수입사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각 조항에 따라 시행일자(적용일) 상이

조항	주요 내용	위임/이행 법률 채택	시행일	비고
제5조	유해물질 최소화	-	'26.8.12.	-
제6조	재활용 등급	'28.1.1. '30.1.1.	'30.1.1.	('28.1.1.) 재활용가능성 등급 ('30.1.1.) 대규모 재활용 방법론
제7조	재생원료 사용	'26.12.31.	'30.1.1.	-
제8조	바이오플라스틱	-	-	(~'28.2.12.) 기술개발 현황 검토
제9조	퇴비화	-	'28.2.12.	-
제10조	포장 최소화	-	'30.1.1.	(~'27.2.12.) 조화표준 개발
제11조	재사용 가능	-	'26.8.12.	-
제12조	라벨링	'26.8.12.	'28.8.12.	표시 대상 별 순차 시행
제24조	포장 빈공간 비율	'28.2.12.	'30.1.1.	-
제29조	재사용 목표	-	'30.1.1.	-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5조 : 유해물질 최소화

중금속 제한 :: 모든 포장재 적용

Pb
(납)

Cd
(카드뮴)

Hg
(수은)

Cr⁶⁺
(6가 크롬)

합계 100mg/kg 이하

PFAS 제한 :: 식품 접촉용 포장재 적용

한계농도* 이상 출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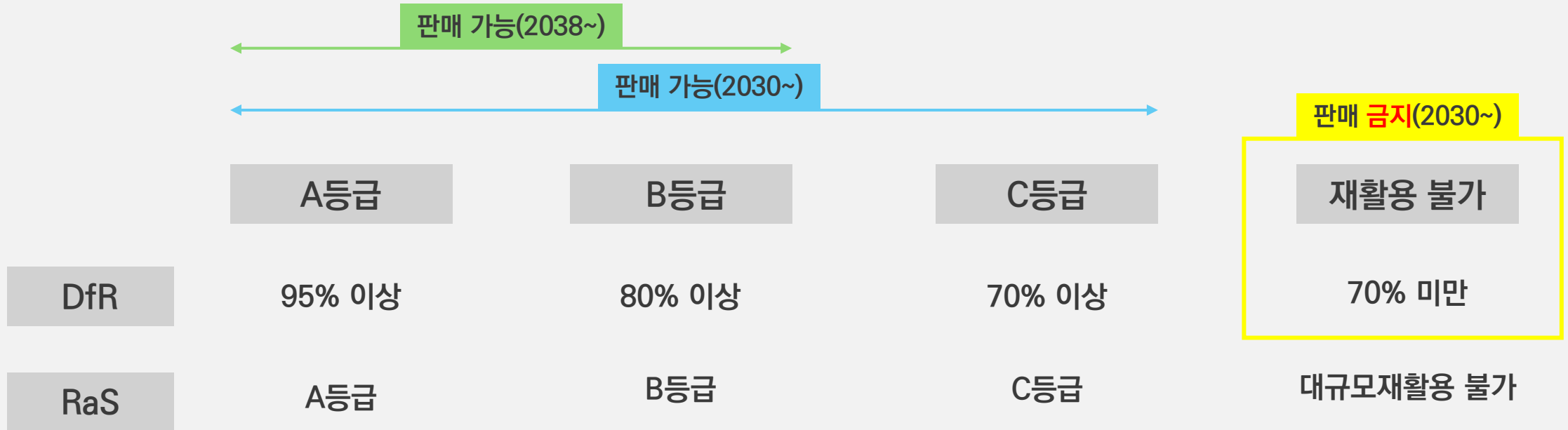
* 개별 PFAS 25ppb 미만 (표적분석)
PFAS 총합 250ppb 미만(표적분석)
PFAS 50ppm 미만(고분자 PFAS 포함)

TD/DoC를 통해 중금속 및 PFAS 함량 미만에 대한 입증 필요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유통 가능 (회수X)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6조 : 재활용 등급



* DfR(Design for Recycling) : 재활용 가능 설계 (28.1.1. 위임법률 채택 → 30.1.1 적용)

* RaS(Recycled-at-Scale assessment) : 대규모 재활용 평가 (30.1.1. 이행법률 채택 → 35.1.1 적용)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7조 : 재생원료 사용

재생원료: 소비자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것(제7조제3항)

	'30.1.1.~	'40.1.1.~
PET 주성분 접촉 민감성 포장	30%	50%
PET 이외 접촉 민감성 포장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그 외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개별 포장 기준(X)

제조 공장별 및 연도별
평균 기준(O)

(26.12.31.) 포장재 내
재생원료 산정 및 검증하는
이행법령 채택

* 최소 비율을 의미함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8조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매스 원료, 유기폐기물 또는 부산물과 같은 생물학적 자원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생분해성 여부와 관계없음)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의 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성 현황 검토('28.2.12.)



입법 안 제출

- ① 바이오플라스틱의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수립
- ②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목표치 설정
- ③ 바이오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량 대체 가능 여부 검토

제9조 : 퇴비화

의무 대상



투과성 티·커피백



과일·채소에 부착된 스티커

EU 회원국 요청시



기계용 음료 포장
(금속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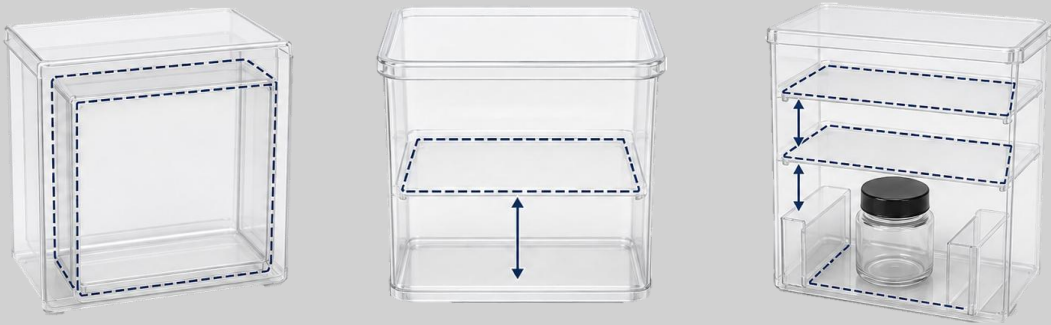


(초)경량 비닐 쇼핑백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10조 : 포장 최소화

모든 포장재는 **최소한**의 중량과 부피로 설계



이중 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층 등
단순히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포장 미출시 보장

제24조 : 포장 빈공간 비율

묶음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
=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text{포장공간비율} = \frac{\text{포장공간용적}^*}{\text{묶음, 운송, 전자상거래 포장 총 부피}}$$

* 묶음, 운송, 전자상거래 포장 총 부피 - 판매 포장 부피



※ 산정 방법 관련 이행 법령: 28.2.12. 제정 예정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11조 : 재사용 가능한 포장

재사용 : 재사용 가능한 포장이 사용 후 본래 의도된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여러 번 다시 사용되는 모든 작업

가능한 많은 횟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

내용물을 비울 때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포장

품질 및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비우고, 다시 채울 수 있는 포장

부록 VI 제B편에 따라 재가공할 수 있는 포장

재가공해도 라벨 부착이 가능하고, 필수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

다시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담당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모두’ 충족 시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29조 : 재사용 목표

(의무) '30.1.1.~

(노력) '40.1.1.~

팔레트, 운반함, 트레이, 중간 벌크
컨테이너, 들통

40%

70%

※ 특정 B2B 운송의 경우 100% 재사용('30.1.1.~)



상자형 묶음 포장
(판지류 제외)

10%

25%



음료 및 주류 판매 포장

10%

40%

II. EU PPWR 주요 의무사항

제12조 : 라벨링

모든 포장에 표시

제12조제1항

**물질
구성**

물질 구성
(소비자가 용이하게
분류하도록)
※ 의무

퇴비화

퇴비화 가능성
폐기 방법 등
※ 해당 시 표시

**우려물질
포함**

우려물질명, 농도 등
※ 해당 시 표시

**보증금
시스템**

보증금 반환
시스템 적용
※ 해당 시 표시

해당하는 포장에 표시

제12조제2항

**재사용
가능**

재사용 가능성
수거 지점 등 재사용
시스템관련 정보
※ 해당 시 표시

제12조제4항

**재생원료
사용**

재생원료 사용 비율
※ 선택

**바이오기반
원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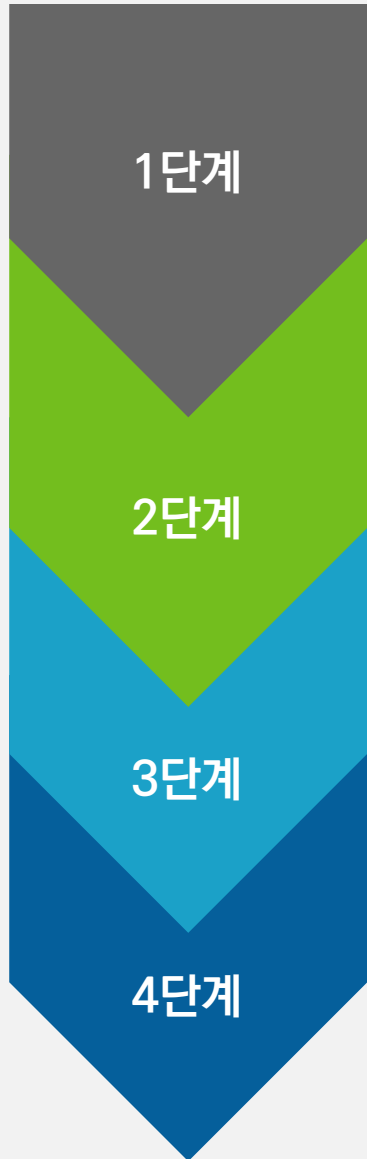
바이오기반 원료
사용 비율
※ 선택

제12조제9항

**EPR
적용**

EPR 의무이행 정보
※ 해당 시 표시

III. EU PPWR 대응 방안



① 회사 제품 및 포장재 현황 자료 취합

- 전체 상품 및 제품 확인 후, 리스트 만들기

② 포장재별 그룹화

- 포장재 공급사, 재질 등을 기준으로 구분 작업
- 포장재 유형 구분
- 조항별 적용 대상 /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③ 증빙자료 확보

- 협력사(포장재 제조사 등)로부터 자료 확보
- 도면, 구조도, 재질사양서 등 기본 자료 확보
- (필요시) 시험성적서 → ISO/IEC 17025 인증 시험기관에 의뢰

④ TD/DoC 준비 및 작성

- ③의 증빙자료 기반 제5조~제12조에 관한 사항 준수 입증

- ✓ 향후 채택되는 이행법령, 위임법률 확인
- ✓ 각 조항 시행 시기를 고려한 포장재 점검 및 변경
- ✓ 포장재 변경 시 관련 서류 업데이트 필요

III. EU PPWR 대응 방안



적합성 평가: 포장에 관한 이 규정의 지속 가능성, 안전성, 라벨링 및 정보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제3조제1항제65호)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 또는 번역

다수의 EU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하나의 적합성 선언 작성

시장 출시일 기준,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 포장) 10년 보관 의무

III. EU PPWR 대응 방안

TD (Technical Document)

2. Technical documentation

The manufacturer shall establish the technical documentation. The documentation shall make it possible to assess the packaging's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and shall include an adequate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isks of non-conformity.

The technical documentation shall specif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and shall cover, as far as relevant for the assessment, the design,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the packaging. The technical documentation shall contain, wherever applicable, at least the following elements:

- (a)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packaging and its intended use;
- (b) conceptual design, manufacturing drawings and materials of components;
- (c) descriptions and explanations necessar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drawings provided under point (b) and the schemes and operation of the packaging;
- (d) a list of:
 - (i) the harmonised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36, applied in full or in part;
 - (ii) the common specif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7, applied in full or in part;
 - (iii) other relevant technical specifications used for measurement or calculation purposes;
 - (iv) in the event of partly applied harmonised standards or common specifications, an indication of the parts which have been applied;
 - (v) in the event of harmonised standards or common specifications not being applied, a description of the solutions adopted to meet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oint 1;
- (e) a qualitative description of how the assessments provided for in Articles 6, 10 and 11 have been carried out; and
- (f) test reports.

PPWR ANNEX VII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No (*) ...

1. No ... (unique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2.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and, where applicable, the manufactur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3.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4. Object of the declaration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allowing traceability): description of the packaging:
5. The object of the declaration referred to point 4 is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 (reference to the other Union acts applied).
6. References to the relevant harmonised standards or the common specifications used or references to the other technical specifications in relation to which conformity is declared:
7. Where applicable, the notified body ... (name, address, number) ... performed ... (description of intervention) ... and issued the certificate(s): ... (details, including the date of the certificate(s), and, wher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duration and conditions of validity).
8. Additional information:
 - Signed for and on behalf of:
 - (place and date of issue):
 - (name, function) (signature):

PPWR ANNEX VIII

PPWR 부속서 내 TD / DoC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

III. EU PPWR 대응 방안

TD (Technical Document)

	주요 내용	실무 자료 예시
(a)	포장의 일반적 설명 및 사용 목적	포장 명, 유형, 용도, 적용 제품 포장의 유형 등
(b)	설계 및 제조 도면, 포장의 구성요소 및 재료에 관한 정보	도면, 구조도, 구성요소의 재질, 재질사양서 등
(c)	도면 및 자료와 포장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	(b)에 관한 설명 - 포장의 구성 및 구성요소 별 역할 - 포장의 사용, 작동 방법 등
(d)	적용한 조화 표준, 공통 규격, 기술 규격 목록 - 부분 사용 시 적용된 부분 표시 - 표준이나 공통 사용 미적용 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사용한 방법 설명	적용한 EN표준, 공통규격, 기타 규격 표준 미적용 시 PPWR적합성 입증에 위해 사용한 방법 명시
(e)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명시된 평가 수행 방법	(제6조) 포장재 등급(Grade) (제10조) 포장의 최소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 (제11조) 순환 횟수
(f)	시험 보고서	시험성적서, 측정 결과 등 시험자료

III. EU PPWR 대응 방안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주요 내용	실무 자료 예시
1	포장의 고유 식별번호	포장의 품번, 모델번호 등
2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해당시) 공인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회사명, 본사 주소, EU 공인대리인 정보 등
3	해당 DoC가 제조자의 책임 하에 발행된다는 선언	“본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회사는 상기 제품이 EU 제2025/40호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4	포장의 식별 및 설명 (추적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포장명, 포장 형태, 재질, 규격 등 (구체적으로)
5	EU 조화법령에 적합하다는 선언 및 참조 정보	적용되는 기타 EU법령
6	적합성 판단에 사용된 조화표준, 공통 규격, 기타 기술 규격에 관한 정보	적용한 EN표준, 공통규격, 기타 규격 등
7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번호, 수행한 평가내용 및 인증서 관련 정보	인증기관, 평가내용, 인증서 번호 및 관련 정보
8	(해당시) 대리인의 정보	발행 장소 및 날짜, 이름, 서명 등

III. EU PPWR 대응 방안

www.portal.budamgum.or.kr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 고객마당 - 통합자료실 - EPR - 업무구분: EU PPWR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제도소개

업무계산기

고객마당

홈 · 고객마당 · 통합자료실

고객마당

통합자료실

1·2차 설명회 발표 자료
TD / DoC 작성 예시 등
관련 자료 공개

부담금

EPR

EcoAS

업무 구분

EU PPWR

조회

번호	업무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	EU PPWR	알림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관리자	2026-01-29	1363
5	EU PPWR	기술문서(TD) 작성 예시	관리자	2026-02-20	102
4	EU PPWR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예시	관리자	2026-02-20	92
3	EU PPWR	[포장재공제조합] PPWR 주요내용 및 후속 조치 일정 보고서	관리자	2026-02-02	163
2	EU PPWR	[KOTRA]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관리자	2026-02-02	132
1	EU PPWR	제품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발표자료	관리자	2026-01-30	137

III. EU PPWR 대응 방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0

2030

〈중금속〉 제5조 ('26.8.12.)
납+카드뮴+수은+크롬 함량 제한

〈라벨링〉 제12조 ('27.2.12. -순차시행)
EPR, 분리배출, 재사용 가능 등 표기

〈EPR〉 제44조 ('26.8.12.)
개별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재생원료〉 제7조 ('30.1.1.)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

〈재활용성〉 제6조 ('30.1.1.)
A,B,C 등급만 시장 출시 가능

〈과대포장〉 제10조('30.1.1.)
포장 최소화

〈PFAS〉 제5조 ('26.8.12.)
PFAS 함량 제한(식품 접촉 포장재)

〈생분해(퇴비화)〉 제9조 ('28.2.12.)
티백, 과일채소 라벨 등 의무화

〈보증금〉 제50조 ('29.1.1.)
보증금 반환제도(DRS) 도입

〈재생원료〉 제7조 ('40.1.1.)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 강화

〈재활용성〉 제6조 ('38.1.1.)
A,B 등급만 시장 출시 가능

국내 자원순환 정책

〈과대포장〉 「제품포장규칙」 ('03)
공간비율 기준 수립

〈생분해(퇴비화)〉 「환경기술산업법」 ('03)
생분해성 수지 인증

〈중금속〉 「제품포장규칙」 ('06)
납+카드뮴+수은+크롬 함량 제한

〈PFAS〉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3)
PFOA, PFOS, PFHxS 사용 금지

〈재생원료〉 「자원재활용법」 ('2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

〈과대포장〉 「자원재활용법」 ('26)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재생원료〉 「자원재활용법」 ('30~)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30%)

〈라벨링〉 「자원재활용법」 ('03)
분리배출 표시 의무

〈EPR〉 「자원재활용법」 ('03)
생산자에 재활용의무 부여

〈재활용성〉 「자원재활용법」 ('19)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보증금〉 「자원재활용법」 ('22)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제주, 세종)

〈재생원료〉 「자원재활용법」 ('26)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10%)

III. EU PPWR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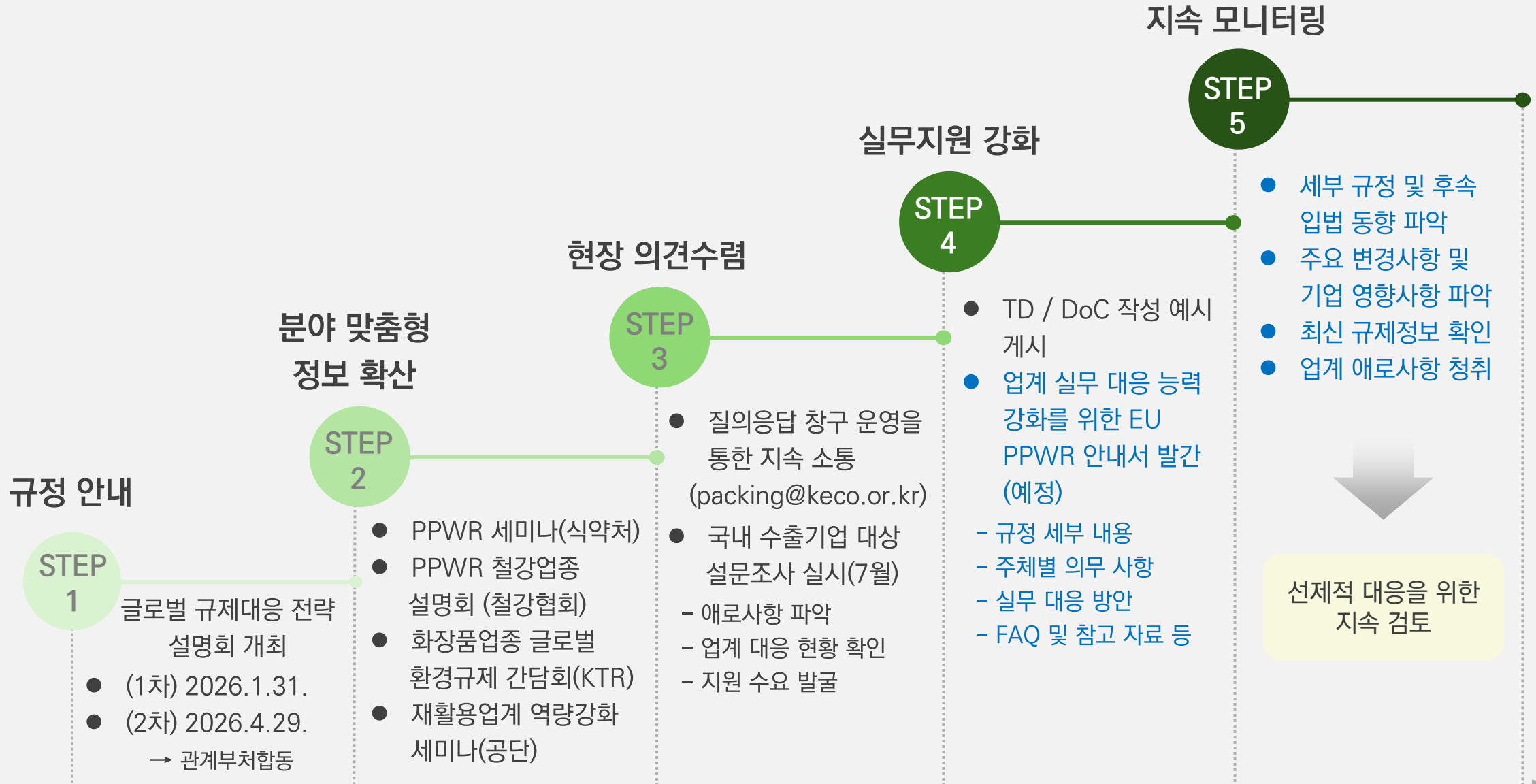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국내 자원순환 정책

	〈과대포장〉「제품포장규칙」('03) 공간비율 기준 수립 〈생분해(퇴비화)〉「환경기술산업법」('03) 생분해성 수지 인증 〈중금속〉「제품포장규칙」('06) 납+카드뮴+수은+크롬 함량 제한 〈라벨링〉「자원재활용법」('03) 분리배출 표시 의무 〈EPR〉「자원재활용법」('03) 생산자에 재활용의무 부여 〈재활용성〉「자원재활용법」('19)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중금속〉 제5조('26.8.12.) 납+카드뮴+수은+크롬 함량 제한 〈라벨링〉 제12조('27.2.12. -순환산업) EPR, 분리배출, 재사용 가능 등 표시 〈EPR〉 제44조('26.8.12.) 개별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PFAS〉 제5조('26.8.12.) PFAS 함량 제한(식품 접촉 포장재) 〈생분해(퇴비화)〉 제5조('26.8.12.) 생분해성 수지 인증 〈보증금〉 제44조('26.8.12.) 보증금 반환제도(DRS) 도입 〈PFAS〉「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23) PFOS, PFOS, PFHxS 사용 금지 〈재활용성〉「자원재활용법」('26)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보증금〉「자원재활용법」('22)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제주, 세종) 〈재생원료〉「자원재활용법」('26)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10%)
〈재생원료〉 제7조('30.1.1.)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 〈재활용성〉 제6조('30.1.1.) A,B,C 등급만 시장 출시 가능 〈과대포장〉 제10조('30.1.1.) 포장 최소화	〈재생원료〉 제7조('40.1.1.)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 강화 〈재활용성〉 제6조('38.1.1.) A,B 등급만 시장 출시 가능 〈재생원료〉「자원재활용법」('30~)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30%)

PPWR이 완전히 새로운 과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III. EU PPWR 대응 방안



감사합니다
